

제 호

고압가스 수입업자(고압가스 운반자) 등록증명서

상 호		
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
사업소 소재지		
수입(운반)고압가스의 종류		
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	[]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(허용농도 200ppm이하) [] 차량에 고정된 탱크 []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(튜브트레일러) [] 고압가스(LPG포함) 용기 운반차량(허용농도 200ppm이하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은 제외한다) [] 탱크컨테이너	
고압가스운반능력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의3제1항 전단·제5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(고압가스 운반자)의 등록을 마쳤으므로 고압가스수입업자(고압가스 운반자)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직인

(뒤 쪽)

변경등록의 내용

[illegible]